

## **지정검역물의 운송·입출고·보관관리 기준**(제44조의24제3항 관련)

### 1.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

#### 가. 살아있는 야생동물 운송차량

- 1) 운송차량의 전면 또는 측면에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.
- 2) 운송차량에 야생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화물칸이 있어야 하고,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.
- 3) 화물칸에는 야생동물의 외부 노출 및 오염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- 4) 화물칸 내부에는 야생동물이 수송 중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5) 화물칸 상부에는 태양광선·비·눈 등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설치하되, 충분한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.
- 6) 운송차량의 후면에는 개폐식 문과 앞좌석에서 수송 중 동물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안전창을 설치해야 한다.

#### 나. 그 밖의 지정검역물 운송차량

- 1) 운송차량의 전면 또는 측면에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.
- 2) 지정검역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수송 중 누수 또는 오염물질 누출이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하며,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해야 한다.

### 2. 지정검역물의 입출고·보관관리기준

가. 보관관리인 또는 검역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·출고하는 경우 그 지정검역물의 종류, 검역종료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.

나.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명, 입고일시, 검역종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
다. 보관관리인 또는 검역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.

라.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만 출고할 수 있다.